

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
제304회 제1차 정례회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-

제안설명서



2024. 6.

박종길 의원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박종길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“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”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문화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생활실천 방안을 모색하고,
-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, 정의,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는 사업계획 수립 ·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주민의 교육지원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평가 및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경우에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
□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-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

【박종길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4053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5. 30.

발의자: 박종길, 장호섭, 서민우,
정순옥, 고명욱, 박정환,
임미연, 정창근, 김정희

1. 제안이유

-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“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”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생활실천 방안을 모색하고,
-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사업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교육지원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사업지원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사업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8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나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이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탄소중립”이란 대기 중에 배출 ·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(零)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.
2. “마을”이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· 문화 ·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·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.
3. “탄소중립마을 만들기”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.
4. “사업주체”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추진하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, 이

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.

② 주민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구청과 협력해야 한다.

③ 사업주체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지원 등) 구청장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, 연수, 박람회, 세미나,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지원)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
2.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·홍보 사업
3.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
4.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
5.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

6.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
7.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신청 등) ①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과 협장 확인을 할 수 있다.

제8조(평가 및 포상)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·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·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금의 환수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1. 목적 외에 사용한 때
2. 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

4.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때

5.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에 관련 사항은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관계법령 】

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,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,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,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,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-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

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,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

1.~3. <생략>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

관리

- 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